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말기에건환자 연명의료계획서 등〉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536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예견환자 포함	3
2. 호스피스전문기관 제도 정비	10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21

I .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8. 11.

(3) 회 부 일 : 2026. 8.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함.

그런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신청하여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면서 삶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의 경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달리 의사결정능력이 아직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므로, 미리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덧붙여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인력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는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및 호스피스 이용·대기 환자 보호 등의 문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령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 이용·대기 환자 보호 등

을 위한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휴업의 경우도 그 기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휴업의 장기화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를 포함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인력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절차를 강화하며 휴업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제8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7호,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28조의2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예견환자 포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u>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u> 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u>말기환자등</u> 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생략)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 <u>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u> 및 <u>말기가 예견되는 환자</u> -----. 8. ----- <u>말기환자등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u> ----- ----- ----- ----- -----. 9. (현행과 같음)
제10조(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 등) ① 담당의사는 <u>말기환자등</u> 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	제10조(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 등) ① ----- <u>말기환자등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u> ----- -----

현행	개정안
할 수 있다. ② 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 ② 말기환자등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는----- -----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0조는 담당의사가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말기환자등은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전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환자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 등) ① 담당의사는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환자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는데, 연명의료계획서에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연명의료계획서에는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환자의 서명(녹화 또는 녹취로 대체 가능)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자료]

□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게 되면 담당의사는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함.²⁾ 다만, 환자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2.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연명의료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제3항 각 호의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서의 확인
3.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한다.

⑥ 의료기관의 장은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보관하여야 하며,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연명의료계획서의 서식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① 담당의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

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음.

□ 이처럼 현행법이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개정안은 이러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기회를 말기환자뿐만 아니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자기결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현행법에도 19세 이상인 경우 질환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연명의료계획서는 질병이 진행된 환자가 담당의사로부터 현재의 질환과 예후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계획을 작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참고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

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도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환자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되어 있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담당의사는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함.

□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로 인하여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학적으로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말기가 예견되는 경우 담당의사와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등을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2023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에서도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등을 알고 명시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말기환자와 같은 의학적 진단과는 무관하게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을 때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환자 등으로 판정된 이후로 한정하는 현행법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다만,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개정안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우려됨.

현행법상 “말기환자”는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

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여부, 약물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방법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의미함.³⁾

그렇다면 개정안이 의미하는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는 “말기환자”로 진단하기 이전의 환자이므로 사망 여부도 불확실하고 그 시기도 수개월 이상일 것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환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개정안을 통해서 알 수 없으며 이를 결정하는 주체도 명확하지 않음.

이를 확대해석하면 어느 정도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라면 누구나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담당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음. 환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경우 아직 상당한 치료가능성이 남아 있음에도 미래의 치료를 너무 일찍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음.

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임상적 증상
2.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3.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4. 종전의 진료 경과
5.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예견’의 판단기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나 환자에게 생존 가능성에 가망이 없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는 2023년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안 논의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음. 이러한 이유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권고안에 구체적 법률 개정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한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대폭 완화할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연명의료계획서로 바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권고문에는 “환자 본인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등을 알고”라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설명함.⁴⁾

또한, 개정안에 따를 경우 담당의사는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담당의사로서는 의학적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진단을 내릴 수 없는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등을 언급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말기환자로 진단된 이후로 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확대하되, 적정 시점과 판단기준에 대하여 의료 현장 전문가 및 환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정책보고서, 2023.12.

2. 호스피스전문기관 제도 정비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업무에 호스피스전문기관 신고에 대한 검토업무 지원을 추가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및 폐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며, 폐업 시 환자의 전원 등 조치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휴업 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을 중앙호스피스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② ~ ④ (생략)	제23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①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제26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 신고 및 폐업·휴업 신고에 대한 검토 업무 지원</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현행	개정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u>시설·인력·장비</u>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6조(변경·폐업 등 신고) 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u>인력·시설·장비</u>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u>보건복지부장관</u>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① ----- ----- ----- -----<u>시설·인력</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변경·폐업 등 신고) ① ----- ----- -----<u>시설·인력</u>----- -----<u>제28조의2</u> <u>에 따른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u> <u>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u>-----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시설·인력 등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 ③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호스피스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 예정일부터 1개월 전까지 호스피스 이용 및 대기 환자에 대한 보호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 또는 연계 등의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u>보건복지부장관</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 같은 항에 따

현행	개정안
<신설>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호스피스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른 조치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및 해당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폐업이 지역사회의 호스피스 제공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⑥ ----- -----휴업----- -----. ⑦ 호스피스사업 휴업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항 단서에 따른 연장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제1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제28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현행	개정안
<u>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u> 및 호스피스의 신청 등 호스피스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u>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신고,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검토의견

1)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업무 추가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기준⁵⁾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2017년 국립암센터를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 그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을 것
2. 다른 병동과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병동을 갖출 것
3.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연구실 및 회의실을 갖출 것
4.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온라인정보시스템을 갖출 것
5.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현행법상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업무 >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호스피스사업 계획의 작성
4. 호스피스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호스피스대상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6. 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7.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개정안은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업무에 “제26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신고 및 폐업·휴업 신고에 대한 검토업무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 동 업무는 현재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2026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안내’의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사업에 호스피스전문기관 신규 지정 및 운영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2)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에서 ‘장비’ 삭제

□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⁶⁾

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

□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① 인력기준, ② 교육이수 기준, ③ 시설기준, ④ 운영기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흡인기, 산소발생기, 욕창방지용품 등의 장비는 시설기준 중 입원실의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참고자료]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대상 변경사항은 ① 소재지, ② 대표자, ③ 인력 및 시설, ④ 병상 수 등 4가지이며,⁷⁾ 인력 및 시설은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에서의 인력기준과 시설기준(입원실·임종실·상담실·가족실 및 목욕실만 해당)과 같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원실의 구성요소로서 흡인기, 산소발생기, 욕창방지용품 등의 장비는 소모·교체가 빈번한 운영상 요소임을 고려하여 변경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개정안은 이처럼 ‘장비’를 시설의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관리하면서 변경신고의 대상에도 제외되어 있음에도, 법문상 시설 및 인력과 함께 열거되어 있는바,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장비’를 삭제

스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6조(변경·폐업 등 신고) 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4.>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소재지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대표자
 3. 별표 2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입원실·임종실·상담실·가족실 및 목욕실만 해당한다)
 4. 별표 2에 따른 호스피스 병동 전체의 병상 수 또는 입원실의 병상 수
- (이하 생략)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표 2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입원실·임종실·상담실·가족실 및 목욕실만 해당한다)”에는 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 관련 사항

- 현행법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이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규칙은 변경신고서의 서식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의 수리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변경신고 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변경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먼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지정받은 모든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개정안의 시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다만, 이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되는 점, 현행법상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 오류나 업데이트 등으로 시스템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한 다른 신고 방법을 마련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다음, 변경신고의 수리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규정은 이른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변경하려는 것임. 일반적으로 ‘신고’는 법률에서 정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있고,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봄.⁸⁾

반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신고로,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함.⁹⁾

8)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9)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신고의 실질은 일종의 완화된 형태의 허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신고는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신고로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동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호스피스전문기관 폐업·휴업 신고 관련 사항

□ 현행법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절차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보건복지부장관의 수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현행 시행규칙은 휴업·폐업신고서의 서식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면서 ①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② 입원환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에 대하여 ①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 예정일 1개월전까지 호스피스 이용 및 대기환자에 대한 보호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또는 연계 등의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 조치계획서의 타당성 및 지역사회 호스피스 제공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② 휴업의 기간을 6개월로 제한(1회 연장 6개월 가능, 감염병의 확산 등 부득이한 경우 기간 초과 가능)하려는 것임.

- 현재도 시행규칙에서 호스피스전문기관 휴업·폐업 시 입원환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휴업·폐업신고의 절차로서 조치계획서 첨부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 따라서 개정안은 폐업 시 조치계획서의 시기 및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수리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강화하려는 것임.

□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시 해당 기관을 이용하거나 대기하고 있는 환자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현실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수리의 거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수리 여부의 결정 기준으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및 지역사회 호스피스 제공 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은 주관적·불확정적 개념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참고로, 「의료법」 10)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시 해당

10)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설허가의 취소 처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제재규정을 두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 의료업의 폐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로는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및 예방접종의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등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② 삭제 <2020. 3. 4.>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5. 제33조제5항·제7항·제9항·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수용)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한 시점부터 의료진과 질환의 경과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준비와 자기결정의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시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23)
 - 말기환자와 같은 의학적 진단과는 무관하게, 환자가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치료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
-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인력 변경신고 접수창구를 법률에 규정하고, 휴·폐업 관련 절차를 강화하며, 현재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법제처 (신중검토)

- 개정안의 문언만으로는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바, 이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요청 및 연명의료중단 가능여부 등 중요한 법적 효과 발생의 전제가 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적 검토가 필요
- 폐업신고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데,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수리 여부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불확정적인 것이 아닌지 추가적 검토가 필요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1

연명의료계획서 서식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7. 31.>

연명의료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자 상태 [] 발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담당의사	성명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호스피스 이용	[] 이용 의향이 있음	[] 이용 의향이 없음
담당의사 설명사항 확인	설명 사항	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2.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위의 사항을 설명 받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녹화 [] 녹취 ※ 법정대리인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 열람 가능 [] 열람 거부 [] 그 밖의 의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뒤쪽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연명의료계획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1. 28.>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인력 기준

가.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 1) 의사 또는 한의사: 호스피스 병동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전문의 1명 이상.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 2) 간호사: 호스피스 병동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 3)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병동 당 1급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나.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 1) 의사 또는 한의사: 전문의 1명 이상
- 2) 간호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 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호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
 - 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0호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간호사(이하 "호스피스전문간호사"라 한다)
 - 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 라)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다.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 1) 의사 또는 한의사: 전문의 1명 이상
- 2) 간호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 가) 호스피스전문간호사
 - 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호에 따른 종양전문간호사
 - 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2. 교육이수 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인력(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76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고,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16시간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시설 기준

가.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구분	수량	설치 기준
병동	1개 이상	병동 당 병상 수는 29병상 이하로 할 것
입원실	3개 이상	1) 입원실 당 병상 수는 4병상 이하로 할 것 2) 1인용 입원실은 1개 이상 둘 것 3) 입원실 면적은 1병상 당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흡인기(吸引器) 및 산소발생기, 욕창방지용품, 휠체어, 이동형 침대, 손씻기 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5) 남성용 또는 여성용 입원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간호사실	1개 이상	병동의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처치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임종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상담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가족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목욕실	1개 이상	목욕실 바닥은 문턱이 없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화장실	2개 이상	남성용 또는 여성용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이동시설	1개 이상	2층 이상인 병동에는 환자의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휠체어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안전시설		1) 입원실, 목욕실 및 화장실에는 간호사실로 연락가능한 통신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 2) 병동의 복도·계단·화장실 및 목욕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손잡이를 각각 설치할 것
------	--	---

나.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구분	수량	설치 기준
상담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사무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이동차량	1대 이상	가정 방문용 차량을 구비할 것

다.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구분	수량	설치 기준
임종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상담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4. 운영 기준

가. 제1호에 따른 인력 중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업무에만 전담할 것.

다만,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배치되는 사회복지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당직의사 근무 체계와 간호사의 24시간 근무 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것

다.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상담실에 비치할 것

라. 제1호에 따른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간 4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보수교육을 받을 것

비 고

1. 입원형 및 가정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이나 입원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1호나목3)·다목3)에 따른 사회복지사 인

력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를 겸임 배치할 수 있다.

2. 입원형·가정형 및 자문형을 모두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1호다목3)에 따른 사회복지사 인력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를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겸임배치할 수 있다.
3.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 해당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소속된 다른 사회복지사가 있는 때에는 위 표 제1호다목3)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사를 겸임 배치할 수 있다.
4.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의 결원에 따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채용인력이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게 할 수 있다.
5. 입원형 및 가정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 입원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 또는 입원형·가정형 및 자문형을 모두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임종실 및 상담실의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설치된 임종실 및 상담실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가정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상담실의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7.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 위 표 제3호다목에 따른 임종실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1인용 입원실을 임종실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운영목적

-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 시설·인력 변경 및 예산변경 신고,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등

2 법적근거 및 연혁

- 말기암환자 정보시스템^(08년~) 운영 *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으로 명칭 변경('18년)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23.6월)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24.6월)
 - * 제28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신설
 - ** 제22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 신설
-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구축^(24.6월) 및 운영^(24.7월~)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신설^(24.6월)

3 구축정보

- (기관정보) 시설/장비 및 인력 관리(자격증, 교육이수증 등록), 예산변경신고, 월별 근무표 제출
- (사업관리) 국고보조금 교부통지서 발급·조회,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환류 기능
- (기타) 기관대상 공지사항 제공, 시스템 사용자 및 개인정보 처리이력 관리